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09

제출연월일 : 2005. 5.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오송역세권개발사업 등 도 핵심 사업의 추진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복지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충북개발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가 전액 출자하는 간접운영방식에 의한 지방공사(안 제4조)

○ 수권자본금은 2,0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자본금은 도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자본금의 2분의 1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이외의 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충청북도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도지사가 임명(안 제11조)

○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11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12조)

○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감사부서장을 비상임감사로 겸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되, 임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으로 정함(안 제15조)

○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17조)

○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안 제19조)

○ 공사는 주택 및 일반건축물, 토지개발, 임대 관리사업 등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총액은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은 순자산액의 10배이내, 기타 사업은 4배이내로 한정 함 (안 제34조)

○ 공사의 기구 및 정원,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등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안 제40조)

○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안 제43조)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충북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0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자본금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모의 방법으로 도 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지사가 정한다.

④공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 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도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보통주와 우선주로 발행한다.

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7종으로 발행한다.

④공사가 발행할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00만주로 한다.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등기)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1조(사장) ①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면한다.

②사장의 임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영 제56조의3 및「충청북도 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의 관련 실·국장과 세무·회계전문가, 경영인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이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

로 한다.

④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3조(감사) ①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②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하되, 도의 감사부서장을 비상임감사로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4조(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직원의 임면) ①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용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이사(사장을 포함한다)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이사는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이사회) ①공사는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그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사 업

제22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건설, 개발, 분양, 임대 관리사업
2.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3.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4. 관광·리조트 등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5. 공유수면 매립사업
6.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7.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8.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9.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10. 체육시설 건립 및 공원개발사업
11.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위 업무에 관련된 부대사업
13. 기타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②공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자문

을 얻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4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내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도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장 재무회계

제25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도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예산 편성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사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

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결산)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 완료후 결산서에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비용의 부담)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비용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기타 사업자의 대행사업 비용의 부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기금의 조성) ①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1조(회계의 원칙 등) ①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이익의 배당
4.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제3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도지사는 공사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사채 발행 등) ①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영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채의 발행 한도액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중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은 영 제14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의 10배이내, 그 이외의 사업은 4배이내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도지사는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보증하는 사채 및 차관에 대하여는「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5조(단기차입금 등) ①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미만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6조(선수금) ①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38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물품관리)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 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장 감 독

제40(감독) ①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4. 제23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의회는 공사에 대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

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42조(업무상황의 공표) ①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도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경영평가)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 제78조 및 영 제68조 규정에 의한다.

제44조(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 이외에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제45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공무원의 파견·겸임) ①도지사는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사장은 도지사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도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48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충청북도 공인 조례」에 준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조례 제2669호, 2001.9.13)는 충북개발공사 설립 등기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시 출자액) 공사설립 당시의 자본금은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자산평가액과 기타 도의 자산중 도의회에서 의결받은 현금 및 현물 출자액으로 하며, 출자액과 관련한 채권 채무는 공사가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잔여재산 귀속) 특별회계에서 공사로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이외의 모든 잔여재산은 충청북도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제6조(계약 및 협약의 승계) 이 조례 시행전 도지사가 제3장에 규정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관과 체결한 계약 및 협약은 공사 설립일에 공사에 포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도지사의 공인비치) 공사는 부칙 제6조에 의한 공영개발사업 업무가 종료할 때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關 係 法 令

□ 地方公企業法

제49조(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2·12·8>

②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③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제52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본조신설 1980·1·4]
제53조(출자) ①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1992·12·8>
②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12.8, 2002.3.25>
③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1980·1·4]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공사는 당해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30]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개정 1992·12·8>[본조신설 1980·1·4]
제56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1992·12·8, 1999.1.29>[본조신설 1980·1·4]

제57조(등기)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80·1·4]

제58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②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

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9.1.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④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1999.1.29, 2002.3.25>

⑤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1992.12.8, 1999.1.29, 2002.3.25>[본조신설 1980·1·4]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9.1.29, 2002.3.25>

②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 地方自治法

제137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